

검사대상 승강기 및 수수료 안내

[고객안내번호 : 4013-1911-0400-2]

1. 건물정보

건물명	서울시청서소문별관
건물주소	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(서소문동)
안전관리자	장 * 용 (교육유효만료일자 2022.09.09 일까지)

2. 고객전용납부계좌 (납부금액 : 236,170원)

국민은행	67659011691482	기업은행	08207183797009
농협은행	79012718699350	신한은행	56211159351894
우리은행	27376672818462	우체국	81081280591182

※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승강기민원24에서 검사신청 시 입력한 정보로 발행됩니다.
 (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은 발급일로부터 익월 10일까지만 가능)

3. 검사대상 승강기 및 수수료

검사종류		정기검사		검사대수		2대		총수수료		236,170원	
순번	검사주기 도래일	호기 (설치장소)	승강기 고유번호	승강기형식	승강기종류	운행층수/ 주행길이(m)	검사수수료 (*휴일야간)	번호판 수수료	분동 수수료	부가세	
1	2019.11.19	8(후생동-1)	0040-413	권상식	승객용	4	105,900	0	0	10,590	
2	2019.11.19	10(별관5동)	0040-416	권상식	승객용	7	108,800	0	0	10,880	
합계							214,700	0	0	21,470	
총합계							236,170				

※ 동일건물 내 여러 대의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편의 등을 위하여 검사주기를 통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"승강기민원24"에서 승강기 검사주기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(승강기민원24 → 민원신청 → 행정민원신청 → 승강기 검사주기 조정신청)

※ 설치검사, 수시검사, 정밀안전검사 분동수수료 안내

「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제81조, 「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」 별표3 및 별표4에 따라 분동(하중시험을 위한 무게추) 수수료(73,000원 VAT별도)는 별도 산정됩니다.

시험하중이 2,000kg을 초과하는 승강기의 경우 신청인께서 별도의 분동을 준비하여야 하며, 2,000kg 이하인 승강기도 직접 분동을 준비할 경우 분동수수료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.

문의 : 고객지원센터 1566-1277

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

